

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오경환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오 경 환
(새정치민주연합, 기획경제위원회)

-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장님과
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 마포 제4선거구 출신,
 새정치민주연합 오경환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
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
 「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
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
 법률」로 전부개정되면서
 변경된 법규들을
 조례의 해당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- 주요내용은
 상위법령인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
 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
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에

평가 규정을 보완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또한,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폐지된

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으로써

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

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

서울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

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서울시 농업을 육성하는 데

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